

# 일산화탄소(CO) 중독사고



출처/가스안전·발행/한국가스안전공사

## 사례1.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CO중독사고

### ▶ 사고일시 및 장소

- 2003년 01월 09일(수) 09:20분경
- 서울 용산구 청파 동 주택

### ▶ 피해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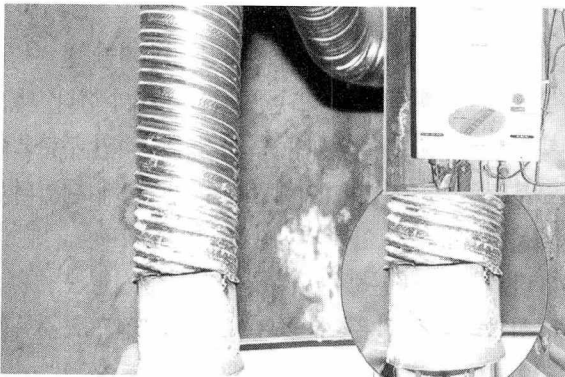
- 인명피해: 사망 1명
- 재산피해: 없음

### ▶ 시설현황

- 가스보일러(FE: 강제 배기식 97년 제조)

### ▶ 사고원인

• 가스보일러 배기통이 보일러 접속 구에서 이탈되어 있고 배기통 톱부분과 연결된 굴뚝의 내부가 완전히 막혀진 상태에서 보일러를 가동하여 배기가스가 실외로 배출되지 못하고 역류되어 가스보일러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지하 보일러실에 체유



한 배기가스가 거실의 마루바닥 틈새 등을 통하여 실내로 유입되어 중독·사망한 사고로 추정됨.

▶문제점

• 사용자가 수시로 가스보일러의 배기통 접속부 등을 점검하여 이상 발견 시 개선 후 사용할 수 있는 안전의식 전환필요.

• 가스보일러 설치·사용자에 대한 주기적인 홍보 실시로 안전의식 고취

• 가스보일러실의 배기가스사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가스보일러실의 문을 닫고 가동 등.

- 하부 급기구가 비닐테이프로 막혀 있음.
- 방조 망 미설치

**사례3.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CO중독사고**

▶사고일시 및 장소

- 2003년 04 29일(화) 14시00분경
- 서울 송파구 삼전 동 2층 주택 반 지하

▶피해현황

- 인명피해: 사망2명
- 재산피해: 없음

▶시설현황

- 사스보일러(FE: 강제 배기식, 93년 9월 제조)

▶사고내용

• 가스보일러 배기통의 U자 모양으로 휘어진 곳에 응축수가 고여 배기가스가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역류되어 보일러와 배기통 접속부의 벌어진 틈새에서 실내로 유입되어 거주자 2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·사망한 사고임.

▶사고내용

- 배기통이U자 모양으로 휘어져 응축수가 고일 수 있는 구조로 가스보일러를 사용
- 환산화물 또는 질산화물에 약한 알루미늄 주름관을 사용
- 배기통을 가스보일러 제조자가 제시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 시공하지 않음, 가스보일러 설치시 시공표지판 미 부착

**사례2. 경기도 시흥시 매화 동 CO중독사고**

▶사고일시 및 장소

- 2004 04월 04일(일) 02: 00분경
- 경기 시흥시 매화 동 00빌라

▶피해현황

- 인명피해: 사망 2명, 부상 1명
- 재산피해: 없음

▶사고원인

• 피해자가 방조 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FE형식의 가스보일러 배기통 내부에 새가 동지를 틀어 놓은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던 중 배출되지 못한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면서 일산화탄소에 중독 된 사고임.

▶문제점

- 배기통이 외부로 돌출 시공 필요.

